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의료기관 감염예방 · 관리(제3판) 정오표

쪽	오(誤)	정(正)
1	1.2. 개인보호구 ○ 의료기관 내 환자, 보호자·간병인, 직원, 단기 근무자 및 방문객 등 출입자는 마스크 <u>착용을 권고한다.</u>	1.2. 개인보호구 ○ 의료기관 내 환자, 보호자·간병인, 직원, 단기 근무자 및 방문객 등 출입자는 마스크를 <u>착용한다.</u>
2	2.1. 일반환자 ○ 일반환자는 의료기관 내에서 마스크 <u>착용을 권고한다.</u>	2.1. 일반환자 ○ 일반환자는 의료기관 내에서 마스크를 <u>착용하도록 한다.</u>
3	2.2. 간병인력 (간병인, 상주보호자) ○ (마스크) 출근 시부터 퇴근 시까지 식사나 음료 마실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마스크 <u>착용을 권고한다.</u>	2.2. 간병인력 (간병인, 상주보호자) ○ (마스크) 출근 시부터 퇴근 시까지 식사나 음료 마실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마스크를 <u>착용한다.</u>
	2.4. 직원 ○ 의료기관 직원은 마스크 <u>착용을 권고한다.</u>	2.4. 직원 ○ 의료기관 직원은 마스크를 <u>착용한다.</u>
6	5.1. 코로나19 환자 외래 진료 ○ 코로나19 환자는 가능한 일반 환자와 분리하여 <u>진료하도록 권고하며,</u>	5.1. 코로나19 환자 외래 진료 ○ 코로나19 환자는 가능한 일반 환자와 분리하여 <u>진료하며,</u>
	5.2. 코로나19 환자 혈액투석 ○ 의료진은 확진환자를 진료할 때 개인보호구(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, KF94 또는 N95 마스크, 장갑,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등)를 <u>착용을 권고한다.</u>	5.2. 코로나19 환자 혈액투석 ○ 의료진은 확진환자를 진료할 때 개인보호구(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, KF94 또는 N95 마스크, 장갑,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등)를 <u>착용한다.</u>